

2012. 5. 18.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395	충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96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 일자	회부 일자	상정 일자	의결 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 5.14.	2012. 5.14.	2012. 5.17.	2012. 5.17.	이종구 의원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 5.10.	2012. 5.14.	2012. 5.17.	2012. 5.17.	환경정책과장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②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①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 자율방범대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함(안 제4조)
- 다.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②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 적용대상 기관을 정함(안 제3조)
- 나.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다.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정함(안 제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율방범대는 스스로 자원하여 무보수로 경찰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여 각종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임.

본 조례안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그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경찰을 보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단체임에도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왔음.

따라서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②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임.

주요 개정사항은 “충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부분은 현 조례를 단순히 상위법에 맞추어 “친환경상품”이란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임.

‘충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2011년도 한 차례도 개최된 바 없으며, 또한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전문성이나 형평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보여짐.

5.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질의 : 안 제4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기타 부분은 경찰서 등에서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 :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질의 : 자율방범대 업무 소관이 시장이 아님에도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답변 :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음.

②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질의 : 녹색제품 이란?

답변 : 환경부에서 지정함.

(2) 질의 : 녹색제품의 구분이 육안으로 가능한지?

답변 : 표시마크가 있음.

(3) 질의 : 위원회를 폐지하는데?

답변 : 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전문성이 필요 없음.

6. 심사결과

①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②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붙임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충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법대가 원활한 방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법 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유류비 등 방법순찰 차량유지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방법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p>제4조(지원 등) ① ----- ----- 지원할 수 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